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

2 차 통보 · 계속근로 1 년 이상 근로자용

수 신		문서번호	
소속 / 직위		통 보 일	년 월 일

근로기준법 제 6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. 1 차 촉구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셨기에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.

1 차 촉구일	년 월 일	미사용 일수	일
사용 기간 만료일	년 월 일	지정 일수	일

회사가 지정한 사용 시기

연번	사용일	일수	구분(연차/반차)	비고
1	년 월 일			
2	년 월 일			
3	년 월 일			
4	년 월 일			
합계		일		

지정된 날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직인)

수령 확인 : 소속 성명 (서명 또는 인) 수령일 년 월 일

※ 근로기준법 제 6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서면 통보입니다. 통보 기한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입니다.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의 처리(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 등)는 회사의 조치 방식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